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055

발의연월일: 2022. 6. 20.

발 의 자 : 윤준병・임종성・노웅래

오영환 · 양경숙 · 양정숙

김수흥 · 장철민 · 김승남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명인이 자진하여 식품명인 명칭의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 이 없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 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생 략)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 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 이 되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 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하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